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12. 13 선고 2024가단6718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2. 6.

판결 선고 2024. 12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. 내지 라. 가.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C호 부분 38㎡를 인도하고,
나. 7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1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,
다. 2024. 8. 28.부터 위 선내 C호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최아름

별지